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2
----------	-----

발의연월일 : 2025. 1. 24.

발의자 : 이정애, 한근수, 정현미,
김동훈, 원주영, 이수련,
김상수, 박경원, 이상기,
박윤옥, 이진환

1. 제안 이유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운영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의 체육회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남양주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7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남양주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운영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시는 3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편성목·통계목		2025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517,393
	201 일반운영비	99,397
	01 사무관리비	42,190
	02 공공운영비	57,207
	301 일반보전금	2,417,996
	12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417,996

다만,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민간위탁 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수수료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동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7.>